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8009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8.01.2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1.06.11.

홈페이지
<http://6min30s.com>
대표메일
6min30@naver.com

‘육분삼십’ 가맹점 개설을 위한 정 보 공 개 서

(주)편백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편백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70, 근린생활시설동 2층 지218호

(장지동, 송파와이즈더샵)

전화번호 : 02) 3444-9312 / 1544-9552

담당부서 : (주)편백가 프랜차이즈사업본부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편백가	육분삼십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70, 근린생활시설동 2층 지 218호(장지동, 송파와이즈더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04.24	2017.04.27	정연진	02-3444-9312 1544-9552	02-425-2481
	법인등록번호	110111-6384541	사업자등록번호	894-87-0070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정연진	육분삼십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70, 근린생활시설동 2층 지 218호(장지동, 송파와이즈더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연진	02-3444-9312 1544-9552	02-425-248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이사)	권영식	육분삼십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70, 근린생활시설동 2층 지 218호(장지동, 송파와이즈더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연진	02-3444-9312 1544-9552	02-425-248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 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육분삼십'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육분삼십	
상 호	육분삼십 ()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400985-0000
광 고	해당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0년	642,156	385,029	257,127	940,175	666,974	14,946
2019년	627,416	385,235	242,180	1,498,787	3,023	557
2018년	648,023	406,400	241,622	1,016,639	4,646	717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정연진	대표	2014.01~2016.06	사쿠 대표	회사업무 총괄
		이사	2014.10~2016.02	(주)hbc craft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권영식	이사	2014.01~2015.03	W버거 마케팅실 팀장	마케팅전담
			2015.04~2017.03	(주)미우코퍼레이션 재무팀장	회계전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0년 12월 31일	2	0	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육분삼십]외에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육분삼십 (상표권)	가맹점 상호로 사용	2018.09.28.	40-1400985-0000	(주)편백가	2028.09.28.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육분삼십]

가맹사업 현황

1. [육분삼십]을 시작한 날: (가맹점 영업개시일 : 2018년 6월 25일)
(직영점 시작일 : 2017년 4월 24일)

2. [육분삼십]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편백가	육분삼십	정연진	2018.06.~ 2019.09.10.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1길 39-6, 지층3호(방이동)
(주)편백가	육분삼십	정연진	2019.09.11.~ 2020.03.21.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20, 상가동 1층 150호(장지동,위례중 양푸르지오1단지)
(주)편백가	육분삼십	정연진	2020.04.01.~ 현재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70, 근린생활시설동 2층 지218호(장지 동, 송파와이즈더샵)

3. [육분삼십]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육분삼십	한식	소고기, 돼지고기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육분삼십]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18.12.31.			2019.12.31.			2020.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9	4	5	16	10	6	19	13	6
서울	5	2	3	8	4	4	6	3	3
부산	1	1		1	1		2	2	
대구	1		1	1		1	1		1
인천				1	1		1	1	
광주	1	1		1	1		1	1	
대전									
울산				1	1		1	1	
세종									
경기	1		1	3	2	1	4	4	
강원									

충북									
충남							1	1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육분삼십)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18	-	4	-	-	-	4
2019	4	7	-	1	-	10
2020	10	4	-	1	1	13

6. (육분삼십)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육분삼십)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식재료를 (육분삼십)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지 않아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우며 그 공급 불규칙이고 또한 현재까지 POS를 강제하지 않아서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0년말 가맹점수	2020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 당	하한	면적 3.3m2 당	
전체	13							
서울	3	해당없음						5곳미만
부산	2	해당없음						5곳미만
대구								
인천	1	해당없음						5곳미만
광주	1							

대전								
울산	1	해당없음						5곳미만
세종								
경기	4	해당없음						5곳미만
강원								
충북								
충남	1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육분삼십] 브랜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0년	13	498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별도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0년]에 [육분삼십]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3]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0.01.~12.	8,502	8,502	-	
광고						
판촉						

※ 당사에서 [2020년]에 [육분삼십]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기 어려워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의 총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기업은행	방이역 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길 4 삼대양빌딩	02-404-4105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편백가]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보상보험 제도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육분삼십〕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 당일 즉시 전액 지급	반환되지 않음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만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소멸성 비용	-
교육비	5,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반환되지 않음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만 반환)	교육 및 교육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계약이행 (현금)보증금	5,000	계약 체결 당일 즉시 전액 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1,500
가맹비	11,0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 (현금)보증금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의 1. 물품 구입 및 임차]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坪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77,000 내외				
인테리어	가맹본부 (협력업체, 외 3개업체)	35,200천원 내외	3.3m ² 당 1.760천원	가맹 계약시 개별계약	공사 전 계약취소	점포 면적/구조에 따라 상이
주방설비 및 공사		17,600천원 내외				

주방기기 및 기물 (간판, 테이블포함)		26.400천원 내외				설치 설비/집기에 따라 상이
설계/감리비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 시 검수비 : 1坪당 330천원(부가세포함)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별도공사 내역은 철거, 냉난방, 전기증설, 가스설비, 소방설비, 정화조증설, 외부덕트, 가스온수기, 음향시설, 통신설비, 화장실공사, 폴딩도어 등이며 비용은 별도 부담 하셔야 합니다.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인테리어 공사관련 당사의 디자인,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330천 원(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개시 시점까지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p>가맹희망자가 고려중인 입지를 당사 프랜차이즈 사업본부 담당자에게 제시 → 지도상/사진 상으로 사전 확인 → 당사 담당자 등이 방문하여 조연 → 가맹희망자 최종 결정</p> <p>※ 당사가 입지 선정시 조연을 드리는 사내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육분삼십' 점포와의 상권중복 여부 2) 점포의 전용면적(최소 20평이상) 적합성 3) 점포의 위치 : 1층 우선 (상권이 우수한 경우 제한적으로 2층도 고려) 4) 가시성 및 접근성 5) 주변의 상권 및 음식점의 분포 6) 물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당사에서는 매출이나 영업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임차료/권리금 등에 대한 적합성과 해당 입지가 법적/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 -만 25세 이상
종업원 (홀/주방)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9세 이상 -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

※ 가맹점사업자의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포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 귀책사유이므로, 당사에서는 가맹비를 일절 반환치 않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육분삼십]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 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주방잡기	제빙기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T냉동고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개수대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육절기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4구 박스 냉장냉동고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화구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육수용 화구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식기세척기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세척기 선반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일반선반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벽선반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토픽냉장고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주류쇼케이스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주류사 지원
	밥보온고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국보온고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고기숙성고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자재 및 기물	간판	가맹계약에 포함	가맹본부(협력업체)
	테이블/의자	가맹계약에 포함	-
	POS기기	가맹계약에 포함	가맹본부(협력업체)
	편백나무짚틀	가맹계약에 포함	가맹본부
	샤브틀	가맹계약에 포함	가맹본부
	샤브종이	가맹계약에 포함	가맹본부
	인덕션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그릇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간판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
내외장재	실내외공사	가맹계약에 포함	가맹본부(협력업체)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 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액의 1.5%	익월 10일	-	-	-
수시교육	가맹본부	기본교육 무료. 특수사항은 실비청구	개별청구	교육실시 1일전 취소	교육실시후 반환되지 않음	
특별교육	가맹본부	인원당 200천원/1일		교육실시 1일전 취소		
재교육	가맹본부	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협의		교육실시 1일전 취소		
판촉비 (전점)	가맹본부	공동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부담은 협의	개별청구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분담비	가맹본부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30%, 가맹점사업자측 70% 분담원칙)될수 있음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가 지정한 협력업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협의하여 부담금액 결정	업체와 별도계약	설치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가 지정한 협력업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협의하여 부담금액 결정	업체와 별도계약	공사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등의 내구연수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인테리어/간판)	가맹본부가 권장한 업체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 별도 계약	VII. 1. 참조		
고객클레임 처리비	가맹본부, 고객	-가맹점사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 -실속한 처리를 위해 가맹본부가 사전 통보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 맹점사업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음	즉시 지급	-	해당 가맹점을 위해 선지급 한 것임	
카드단말기등 전산사용료	가맹본부가 지정한 협력업체 (미지정)	해당없음				
본부POS와의 통신비						
물류비	가맹본부	-육지:가맹본부 혹은 관계사나 지정업체 공급가액의 5~9% -도서지역:택배비 별도부담	즉시 지급	-		VAT별도 (향후실시)
지연이자	가맹본부	로열티등 영업중의 부담 관련 비용 지급 지체시 연간 24%	도래 재계약 시점	일할계산		VAT별도

현장교육 / 지도비	가맹본부	-방문점검 시 유통기한 경과품 발견시 회당 1백만원	즉시 지급	-		VAT별도
------------	------	---------------------------------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의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0)년도 평균 규모는 제3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의 대부분의 물류를 공급하며, 당사와의 거래는 전체 물류 거래의 1%미만인 관계로 귀하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 (기준: 2020년)	내 용 (단위: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위해서 당사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다)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①귀하가 운영하는 [육분삼십]브랜드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변경은 명의변경이 아닌 영업의 양도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법인’은 영업의 양도와 관련한 절차의 준수 및 관련 비용을 다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가맹본부에서는 양도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적성이나 인성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③본부의 승인에 의해 영업권을 양도 받는 자는, ‘개점전교육비/상권설정수수료’,

‘로열티’ 및 ‘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다시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그 금액은, 양도되는 시기의 ‘개점전교육비/상권설정수수료’, ‘로열티’ 및 ‘이행보증금’에 대한 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이러한 금액은 물가변동이나 가맹본부의 정책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 종료후에도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거나, 민사상 혹은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①영업중단 및 간판철거, 이미지, 상표, 상호, 표장, 디자인, 싸인물, 로고 등을 파기해야 합니다.
- ②[육분삼십]과 관련된 일체의 경영노하우, 조리방법 및 레시피와 같은 사업비밀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 ③매뉴얼, 교육자료, 설비 등과 같은 사업본부의 자산은 즉시 반납/확인 받아야 합니다.
- ④가맹계약서 및 제공된 정보공개서 반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⑤[육분삼십]의 이미지 혹은 시스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업적 이미지, 디자인, 로고, 영업형태, 시설이나 외관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혼동을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⑥본부로부터 인테리어나 간판의 개선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 받은지 3년 이내에 폐점이나 영업을 양도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세부사항

귀하가 『육분삼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구분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부동산	해당없음				
주방집기	제빙기	750	권장	가맹본부 협력업체	X
	T냉동고	1800	권장		X
	개수대	900 / 1200	권장		X
	육절기	900	권장		X
	4구 박스 냉장냉동고	1250	권장		X
	화구	1500	권장		X
	육수용 화구	600	권장		X
	식기세척기	650	권장		X
	세척기 선반	600	권장		X
	일반선반	900	권장		X
	벽선반	1500 / 1200	권장		X
	토평냉장고	1200	권장		X
	주류쇼케이스	650	권장		X
	밥보온고	-	권장		X
국보온고	-	권장	X		
고기숙성고	650	권장	X		
자재 및 기물	간판	-	강제	가맹본부 협력업체	X
	테이블/의자	-	권장	가맹본부 협력업체	X
	편백나무짚틀	-	강제	가맹본부	X
	샤브틀	-	강제	가맹본부	X
	샤브종이	-	강제	가맹본부	X
	인덕션	-	권장	가맹본부 협력업체	X

	그릇	-	권장	가맹본부 협력업체	X
용역	POS 사용료	시스템 사용료	권장	위너스정보통신 또는 자율조달	X
	실내외공사	-	권장	가맹본부 협력업체 또는 자율시공	X
원·부재료	소고기/돼지고기 (별첨 5참조)		강제	(주)미우코퍼레이션	X
	채소류		자율	지역 유통망	X
소스	소스류(별첨 5참조)		권장	(주)미우코퍼레이션	X
공산품	원,부재료, 소스 제외한 공산품 (별첨 5참조)		권장	(주)미우코퍼레이션	X

- ① 귀하가 [육분삼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한 주요 품목별 거래형태는 [별첨5]와 같습니다.
- ② 귀하께서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귀하가 [육분삼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한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별첨6]과 같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상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육분삼십]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2) 당사는 [육분삼십]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메뉴를 무단으로 삭제해서도 안됩니다.

메뉴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소고기 편백찜	왼쪽에 기재된 가맹본부에서 정한 메뉴외에는 추가 혹은 삭제하고 판매할 수 없음. 메뉴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됨.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이상의 시정요구 후 미시정시 해약가능(단,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동일위반행위 3회 이상 반복시 통보와 동시 계약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절차 준용
흠돼지 편백찜			
모듬 편백찜			
오징어무침회			
간장새우장			
흠돼지 샤브샤브			
소고기덮밥			
흠돼지덮밥			
간장새우밥			
소고기 된장찌개			
흠돼지 김치찌개			
누룽지탕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메뉴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메뉴에 대한 맛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청소년)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이상의 시정요구 후 미시정시 해약가능(단,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동일위반행위 3회 이상 반복시 통보와 동시 계약해지)	
고객	배달영업			
고객	소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권장 판매가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메뉴명	권장가격 (단위:원, vat포함)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소고기 편백찜	10,000원	가맹점사업자 대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2020.12월 기준
돼지 편백찜	13,000원		
프리미엄 돼지 편백찜	18,000원		
한우 차돌편백찜	25,000원		
등심 편백찜	14,000원		
돼지 샤브샤브	12,000원		
등심 샤브샤브	14,000원		
프리미엄 샤브샤브	18,000원		
오징어무침회	9,000원		

간장새우장	9.000원		
볶음우동	8.000원		
매콤짬면	6.000원		
소고기덮밥	6.500원		
돼지덮밥	7.000원		
간장새우밥	7.000원		
소고기 된장찌개	5.500원		
돼지 김치찌개	5.500원		
누룽지탕	3.000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소고기, 흠돼지 편백찜과 돼지고기 샤브샤브를 주된 메뉴로 판매하는 음식업종	육분삼십	해당없음

당사가 [육분삼십]의 가맹계약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기준	설정방법
영업지역 내 인구수 3천명당 1점포로 한다. (인구수=거주자+근무자+이용자) 단, 500명 이하의 경우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유동인구가 특히많은 상권(예:명동,종로,강남,서면,동성로등)은 유동인구 동선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영업지역을 확정한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단, -왕복4차선 건너편 비보호(동일브랜드 출점가능)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여 상권설정 내라도 추가 출점 가능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 가맹계약 별지에 영업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발생 →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사업자에게 서면통지→가맹사업자 동의→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여부 회신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육분삼십’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육분삼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육분삼십]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자중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5항,19조,24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6조2항,24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9조,24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12조,24조
○ [육분삼십]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조2항,4조,24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조,12조7항,24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합의해약	개점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합의하면 계약기간의 종료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상호 위약금을 청구치 못함)	25조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이상의 시정요구후 미시정시 해지가능	①고의로 개점전의 교육을 이수치 않거나 재교육에서도 불합격 되었을 경우 ②점포의 확보, 내외장 인테리어, 시설/집기등의 투자, 인허가, 가맹비등, (개점전)로열티, 이행보증금 중 하나라도 미실행/미입금 ③점포에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메뉴의 판매. 당사 시스템등의 점포경영의 사용이나 무단 변경, 점주연수비 미지급, 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등 보험의 미가입, 방역서비스 계약 미체결, 배달영업금지, 타점포의 종업원에 대한 무단 스카우트, 표준가격/조리방법/레시피/지정 거래선미이용, 규정목적외 용도로 점포활용, 본부승인 받지않은 홈페이지/블로그/카페등 운영, 운영기간중의 추가 조리/친절교육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고객클레임 해결을 위해 당사가 요구한 재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방문점검시 미협조, 방문점검시 유통기한 경과품 적발시 현장교육/지도비 미지급, 유통기한/선도 관리, 일정기간 미경과, 일정수준 미달 시 메뉴 도입/취급 중단, 정지 조치, 동종업종 종사, '가맹본부'영업에 대한 방해, 시설/집기의 방치 (비정상적 작동), 교육비 미지급, 지정 거래선의 이용을 위한 절차 위반, 판촉/마케팅 활동 미참여 혹은 비용/수익 미지급, 대금/물류비결제기일 미준수, 원산지표시 의무 미이행, 당사에 예약한 이행보증금에 대한 임의 처분(양도/담보설정등), 고객클레임 해결노력 미흡 혹은 당사가 고객클레임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미지급, 계약기간중 혹은 공사중 점포면적 변경에 따른 가맹비/개점전교육비/상권설정수수료 및 이행보증금 차액의 미지급,	26조

클레임이나 운영수준 저하로 포장판매/신메뉴 추가/24시간 영업에 대한 중단에 대한 미준수
④행정처분등 중요한 변동사항 발생에 대한 미통보
⑤당사에 대한 중대한 불신행위가 있었을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6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 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가맹점사업자의 상권보호를 위하여, 동일한 브랜드로 추가 출점을 하지 않겠다고 지도에 표시하여준 지역 내 추가 출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조
②로열티는 물가 상승등 경제여건의 변화나 당사의 서비스변화 등을 고려하여 로열티의 인상에 대한 추가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연장이나 갱신 시 90일전까지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19조
③계약기간 중 점포면적의 확장으로 인하여 전용면적이 증가하여 가맹비/개점전교육비/상권설정수수료/이행보증금 금액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20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위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해지의사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서면 통지한다.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 = 가맹점을 일시적으로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제도)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영업의 양도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당사가 요구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기준에 적합할 것(연령/적성/성격/프랜차이즈 이해도등)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적어도 6주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개점 전 교육 실시(점주/종업원)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프랜차이즈 사업본부 (02-3444-9312)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과는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수인은 가맹비를 제외한 개점 전 교육비 및 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양수인과 당사간의 가맹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와 양도인과는 합의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에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양도인에게는 월 할 계산하여 로열티 미경과분을 반환해 드립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당사검토 → 담당부서 검토 → 승인여부 통지 → 가맹계약 체결 → 상속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	-		
업무위탁	불가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귀하가 **[육분삼십]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국내 전지역에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소고기, 흠돼지 편백찜과 돼지고기 샤브샤브를 주된 메뉴로 판매하는 음식업종	해당사항 없음	문의: 프랜차이즈 사업본부 (02-3444-931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육분삼십]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귀하의 점포가 개점 후 매출의 추이를 관찰하여 영업시간과 휴무일에 대해 상호 협의합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개점 후 협의	개점 후 협의	문의: 프랜차이즈 사업본부 (02-3444-93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점포에서 24시간 영업을 원할 경우, 본부에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점포의 운영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본부에서는 점포의 24시간 영업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주방 : 2명 홀 : 2명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본사 교육이수)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귀하가 영업장에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매장 운영을 위해서는 주방과 홀에 각각 권장 종업원 수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귀하가 영업장에 직접 근무하기 곤란한 경우는 음식업에 경험이 있는 책임자를 채용하여 점포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매장관리 점검표 작성 → 가맹점 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영업운영팀	
제품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 가맹점 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POS 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 가맹점 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육분삼십]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 광고 상품광고 등	광고비의 30%	광고비 70% / 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 →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 1개월전) →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 비용 부담	제작 비용 부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온라인 판매	없음	판매대행 수수료	월단위정산 → 판매수수료청구(제휴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점포의 판촉으로 인해 주변 점포의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주변 점포에 알리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체인 전체의 이미지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의 유출이라고 하면, [육분삼십]의 시스템/레시피/조리방법/접객방법/매뉴얼/가맹계약서 등의 노하우를 (주)편백가의 사전 문서에 의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열람/대여/복사 등의 처분을 하거나 점유케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양도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점포'내에서 근무/교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점포'의 경영권을 양도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중 어느 일방이 가맹계약서의 각 조항에 정한 것을 위반 혹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 일매출 제출시 : '직전분기 3개월간의 평균 일매출액 x 계약 종료후의 영업일수 x 30%'의 공식을 적용한다.
- 일매출 미제출시 : '직전분기 3개점의 평균 일매출액 x 계약 종료후의 영업일수 x 50%'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단, 해당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해당페이지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4일 이후 계약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조언	요청시 필요에 따라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체결 1일전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5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점포 상황에 따라 1~2주 추가 소요)	30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설치	7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14일	
점포 오픈	- 가맹점 오픈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알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약취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서류를 사전에 본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①본부의 부당한 강요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이라는 내용증명 ②공사의범위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견적등의 관련서류 제출. -공사 후, 가맹사업자의 비용청구 -가맹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사업자의 비용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향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p>(공사계약서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p> <p>(1차:90일 이내, 30% 2차: 1차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30% 3차: 2차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40%)</p>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프랜차이즈 사업본부 (02-3444-9312)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프랜차이즈 사업본부 (02-3444-9312)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육분삼십]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어떠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가맹점사업자께서 책임지고 조달 하셔야 합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육분삼십]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점포 경영의 개요 -검수, 메뉴의 조리방법 -종업원 채용, 교육 및 관리 -POS 조작, 접객방법 등	집합교육 이론/실습	개점 전 교육 이수/통과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전점)	-신메뉴 교육	집합교육 이론/실습		필수 교육
특별교육	-가맹사업자의 요청내용 -조리방법 재교육 -친절, 위생 재교육	개별교육	개별협의	선택 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개별협의	필수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육분삼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가맹희망자 -주방:7일(주방:1명) -홀:7일(홀:1명)	2.000	필수교육
보수 교육 (전점)	개별협의	실비부담	필수교육
특별교육		200/1인/1일	선택교육
재교육		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협의	필수교육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필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와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개점 전까지 신규 교육을 받고 합격해야 하며, 보수교육(전점/클레임대응)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사는 가맹계약서 제26조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문의: 프랜차이즈사업본부(02-3444-931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4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3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편백가

(단위 : 원)

과 목	제 4(당)기		제 3(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266,286,746		290,551,250
① 당 좌 자 산		241,211,666		264,057,090
현 금		102,960		88,477
보 통 예 금		45,490,786		108,234,825
정 기 적 금				5,500,000
외 상 매 출 금		87,084,797		134,744,299
선 금		108,456,502		15,331,452
선 금 비 용		76,621		158,037
② 재 고 자 산		25,075,080		26,494,160
상 품		25,075,080		26,494,160
Ⅱ. 비 유 동 자 산		375,870,097		336,865,097
① 투 자 자 산				
② 유 형 자 산		95,370,097		89,865,097
비 품	106,655,818		105,055,818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9,236,224	67,419,594	39,236,224	65,819,594
시 설 장 치	44,155,000		40,25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6,204,497	27,950,503	16,204,497	24,045,503
③ 무 형 자 산				
④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80,500,000		247,000,000
임 차 보 증 금		5,000,000		
기 타 보 증 금		275,500,000		247,000,000
자 산 총 계		642,156,843		627,416,347
부 채				
Ⅰ. 유 동 부 채		205,029,637		205,235,999
미 지 급 금		50,439,529		38,110,172
예 수 금		3,310,730		4,938,860
선 수 금		2,249,500		5,000,000
미 지 급 세 금		37,897,448		43,383,283
미 지 급 비 용		28,178,033		44,120,234
주 입 종 단 기 채 권		82,954,397		69,683,450
Ⅱ. 비 유 동 부 채		180,000,000		180,000,000
장 기 차 입 금		180,000,000		180,000,000
부 채 총 계		385,029,637		385,235,999
자 본				

재무상태표

제 4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3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편백가

(단위 : 원)

과 목	제 4(당기)		제 3(전기)	
	금 액		금 액	
I. 자 본 금		240,000,000		240,000,000
자 본 금		240,000,000		240,000,000
II. 자 본 잉 여 금				
III. 자 본 조 정				
IV.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V. 이 익 잉 여 금		17,127,206		2,180,348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17,127,206		2,180,348
(당 기 순 이 익)				
당기: 14,946,858				
전기: 557,668				
자 본 총 계		257,127,206		242,180,34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42,156,843		627,416,347

손익계산서

제 4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3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편백가

(단위 : 원)

과 목	제 4(당기)		제 3(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940,175,743		1,498,787,166
상품매출	658,638,287		1,155,318,921	
서비스매출	281,537,456		343,468,245	
II. 매출원가		301,586,126		537,683,542
상품매출원가		301,586,126		537,683,542
기초상품재고액	26,494,160		62,817,653	
당기상품매입액	300,167,046		501,360,049	
기말상품재고액	25,075,080		26,494,160	
III. 매출총이익		638,589,617		961,103,624
IV. 판매비와관리비		637,922,643		958,079,950
직원급여	283,983,095		394,002,787	
상여금	900,000		3,550,000	
사업소득	132,028,934		322,694,753	
퇴직급여	14,304,726		10,325,121	
복리후생비	17,279,396		22,004,888	
여비교통비	770,755		3,255,137	
접대비	3,927,976		3,040,938	
통신비	555,044		371,520	
세금과공과금	16,949,110		14,671,490	
감가상각비			40,949,277	
임차료	5,000,000			
수선비	1,377,900		1,920,000	
보험료	7,232,996		6,100,093	
차량유지비	16,183,120		15,608,180	
운반비	146,330		501,177	
교육훈련비	8,000		46,000	
도서인쇄비	711,573		475,358	
사무용품비	9,545		41,092	
소모품비	6,832,135		30,013,715	
수수료비용	118,830,918		84,522,185	
광고선전비	8,502,280		3,986,239	
건물관리비	2,388,810			
V. 영업이익		666,974		3,023,674
VI. 영업외수익		24,710,135		10,255,749
이자수익	104,382		103,033	

손익계산서

제 4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3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편백가

(단위 : 원)

과 목	제 4(당기)		제 3(전기)	
	금 액		금 액	
대 손 총 당 금 환 입			987,509	
잡 이 의	2,782,613		57	
국 고 보 조 금	21,823,140		9,165,150	
VII. 영 업 외 비 용		8,789,110		12,153,460
이 자 비 용	6,540,775		7,653,600	
보 상 비			200,000	
잡 손 실	2,248,335		4,299,860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의		16,587,999		1,125,963
IX. 법 인 세 등		1,641,141		568,295
법 인 세 등	1,641,141		568,295	
X. 당 기 순 이 의		14,946,858		557,668

재무상태표

제 3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2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편백가

(단위 : 원)

과 목	제 3(당기)		제 2(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290,551,250		321,591,760
① 당 좌 자 산		264,057,090		258,774,107
현 금		88,477		31,202
보 통 예 금		108,234,825		82,023,312
정 기 적 금		5,500,000		6,000,000
외 상 매 출 금		134,744,299		531,850
미 수 금			100,206,748	
대 손 충 당 금			987,509	99,219,239
선 급 금		15,331,452		16,502,500
선 급 비 용		158,037		54,466,004
② 재 고 자 산		26,494,160		62,817,653
상 품		26,494,160		62,817,653
II. 비 유 동 자 산		336,865,097		326,431,860
① 투 자 자 산				
② 유 형 자 산		89,865,097		126,431,860
비 품	105,055,818		100,673,30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9,236,224	65,819,594	9,242,174	91,431,130
시 설 장 치	40,250,000		40,25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6,204,497	24,045,503	5,249,270	35,000,730
③ 무 형 자 산				
④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47,000,000		200,000,000
기 타 보 증 금		247,000,000		200,000,000
자 산 총 계		627,416,347		648,023,620
부 채				
I. 유 동 부 채		205,235,999		226,400,940
미 지 급 금		38,110,172		59,764,076
예 수 금		4,938,860		3,712,480
선 수 금		5,000,000		
미 지 급 세 금		43,383,283		25,139,761
미 지 급 비 용		44,120,234		43,584,623
주 임 종 단 기 채 권		69,683,450		94,200,000
II. 비 유 동 부 채		180,000,000		180,000,000
장 기 차 입 금		180,000,000		180,000,000
부 채 총 계		385,235,999		406,400,940

재무상태표

제 3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2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편백가

(단위 : 원)

과 목	제 3(당기)		제 2(전기)	
	금 액		금 액	
자				
I. 자 본 금		240,000,000		240,000,000
자 본 금		240,000,000		240,000,000
II. 자 본 잉 여 금				
III. 자 본 조 정				-2,132,000
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2,132,000
IV.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V. 이 익 잉 여 금		2,180,348		3,754,680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2,180,348		3,754,680
(당 기 순 이 익)				
당기: 557,668				
전기: 717,133				
자 본 총 계		242,180,348		241,622,68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27,416,347		648,023,620

손익계산서

제 3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편백가

(단위 : 원)

과 목	제 3(당)기		제 2(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1,498,787,166		1,016,639,161
상품 매출	1,155,318,921		991,200,025	
서비스 매출	343,468,245		25,439,136	
II. 매출원가		537,683,542		347,872,277
상품 매출원가		537,683,542		347,872,277
기초상품재고액	62,817,653		39,155,600	
당기상품매입액	501,360,049		371,534,330	
기말상품재고액	26,494,160		62,817,653	
III. 매출총이익		961,103,624		668,766,884
IV. 판매비와관리비		958,079,950		664,120,716
직원급여	394,002,787		234,210,900	
상여금	3,550,000		3,655,000	
사업소득	322,694,753		304,658,397	
퇴직급여	10,325,121			
복리후생비	22,004,888		20,669,214	
여비교통비	3,255,137		4,138,272	
접대비	3,040,938		4,145,110	
통신비	371,520		221,053	
세금과공과금	14,671,490		11,218,790	
감가상각비	40,949,277			
수선비	1,920,000		1,889,091	
보험료	6,100,093		5,028,050	
차량유지비	15,608,180		11,528,560	
운반비	501,177		757,402	
교육훈련비	46,000			
도서인쇄비	475,358		466,764	
사무용품비	41,092		399,367	
소모품비	30,013,715		39,579,882	
수수료비용	84,522,185		18,503,320	
광고선전비	3,986,239		3,051,544	
V. 영업이익		3,023,674		4,646,168
VI. 영업외수익		10,255,749		4,616,568
이자수익	103,033		65,518	
대손충당금환입	987,509			
잡이익	57		1,050	

손익계산서

제 3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2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편백가

(단위 : 원)

과 목	제 3(당기)		제 2(전기)	
	금 액		금 액	
국 고 보 조 금	9,165,150		4,550,000	
VII. 영 업 외 비 용		12,153,460		8,213,043
이 자 비 용	7,653,600		5,693,408	
보 상 비	200,000		225,140	
잡 손 실	4,299,860		2,294,495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1,125,963		1,049,693
IX. 법 인 세 등		568,295		332,560
법 인 세 등	568,295		332,560	
X. 당 기 순 이 익		557,668		717,133

[별첨2]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4]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표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 명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5] 주요 품목의 거래형태

(2020년 기준)

순번	품목	단위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 가맹 금 수취 여부
1	소고기 삼겹양지	1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2	이베리코흑돼지(목살)	1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3	소고기 알목심	1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4	한우 차돌박이	1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5	선동 오징어	1박스/20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6	냉동 새우	1박스/500g*10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7	소고기 덮밥소스	1박스/2kg*5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8	돼지 덮밥소스	2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9	데미그라스소스	2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10	원소스	1박스/2kg*5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11	오징어소스	1박스/2kg*5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12	새우장소스	1박스/2kg*5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13	계란	30개입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14	깻잎	1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15	부추	500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16	숙주나물	1박스/4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17	알배기	1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18	청경채	1박스/4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19	청양고추	1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20	팽이버섯	5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21	참기름	1.8L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22	단호박	1.2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23	우동면	205g*5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24	생라면	6.72kg/140g*48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25	고추지	1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26	포기김치	1박스/10kg	강제	에스피씨지에프에스	X

[별첨6] 주요 품목의 공급가격의 상·하한

(2019년 기준)

품목	단위	공급가 상한(원)	공급가 하한(원)	거래 상대방
소고기 삼겹양지	1kg	11,165	10,15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이베리코흑돼지(목살)	1kg	19,470	17,70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소고기 알목심	1kg	23,760	21,60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한우 차돌박이	1kg	59,400	54,00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선동 오징어	1박스/20kg	185,900	169,00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냉동 새우	1박스/500g *10	83,600	76,00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소고기 덮밥소스	1박스/2kg* 5	93,170	84,70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돼지 덮밥소스	2kg	38,067	34,606	에스피씨지에프에스
데미그라스소스	2kg	12,584	11,44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원소스	1박스/2kg* 5	54,789	49,808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오징어소스	1박스/2kg* 5	99,498	90,453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새우장소스	1박스/2kg* 5	83,600	76,00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계란	30개입	5,654	5,14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깻잎	1kg	19,000	17,273	에스피씨지에프에스
부추	500g	3,427	3,115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숙주나물	1박스/4kg	5,676	5,16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알배기	1kg	2,710	2,464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청경채	1박스/4kg	15,246	13,86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청양고추	1kg	6,821	6,201	에스피씨지에프에스
팽이버섯	5kg	25,322	23,02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참기름	1.8L	28,302	25,729	에스피씨지에프에스
단호박	1.2kg	3,009	2,735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우동면	205g*5	2,969	2,699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생라면	6.72kg/140 g*48	22,022	20,02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고추지	1kg	4,973	4,521	에스피씨지에프에스
포기김치	1박스/10kg	14,586	13,260	에스피씨지에프에스
알배기	1통	1,705	1,550	미우코퍼레이션
명이나물	10kg	57,200	52,000	미우코퍼레이션

[별첨7]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절 취 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가맹본부 보관용)

가맹사업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문)

본인은 육분삼십 가맹본부 『주식회사 편백가』로부터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포함)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본인은 육분삼십 가맹본부 『주식회사 편백가』로부터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포함)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년 월 일 시

2.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장소 :

3.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람 :

4. 가맹희망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육분삼십 가맹본부 (인)	수 령 자 : (인)
주시회사 편백가 대표이사 정연진	
	주민등록번호 : -